

광주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나771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나77152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광양시법원 2023. 4. 26 선고 2022가소5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형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광태, 고단비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진석

변론종결 2024. 5. 1.

판결선고 2024. 5. 29.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23. 4. 26. 선고 2022가소 59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3행부터 3쪽 4행의 “이 사건 계약은 … ‘C’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즉 ① 원고가 2018.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발주서로 보낸 이메일의 제목은 ‘D 제작건입니다’로 그 제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발주한 도면에 기하여 피고가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일 뿐 C사에서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화학플랜트 설비 및 각종 산업 및 화공기계 등 시설, 기계, 기기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이 C사의 제품을 특정하여 구매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피고에게 8개월에 이르는 긴 기간을 정하여 이 사

건과 같은 발주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견적서에 사양 변경의 가능성을 열어둔 문구를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품의 제조사(MAKER)로 ‘E, F, G’을 기재하였을 뿐 ‘C’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피고 측에서는 이 사건 물품 납품 전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물품을 납품하면서 그 성적서도 함께 제출한 바 자체 제작한 물품이 아니라 ‘C’ 사의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었던 점”으로,

○ 제1심판결 3쪽 8, 9, 10행의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를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단순 구매 계약이 아니라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인바 C 사의 도면이 첨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물품 제작에 사용할 모든 부품을 C 사가 제작한 특정 품번의 부품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자체 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물품을 납품을 하였으며, (주)H 측에서 지적한 속도 편차의 문제에 대하여는 오리피스의 교체를 통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 ③ (주)H 측에서 원고에게 보낸 테스트 결과에 관한 메일에서도 자동 작용 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동 작용 시 밸브의 속도 편차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발주서, 견적서 등과 상이하게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함으로써 객관적이고 명백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경, 판사 남수진, 판사 이미주